

# 대학원 체육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[제정 2013. 2.22.]

개정 2015. 4.20.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 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체육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논문지도위원회) (개정 2015.4.20.)**

-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- ② 27학점(3학기)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3인 이상의 위원을 별지 제1호 서식 ‘논문지도위원 추천서’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, 학과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과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하며,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심사한다.
- 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 발표 후 별지 제2호 서식 ‘논문 계획 승인서’를 학과에 제출한다.
- ⑥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**제4조(논문제출자격)**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①석사학위과정

1.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
2.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
3.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

②박사학위과정

1. 3학기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

2. 제5조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
3. 제8조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
4. 제10조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자

**제5조(논문제출자격시험)** ①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 단, 과목 수는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,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③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④전공 각 과목별 출제위원은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하고,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학과주임교수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**제6조(응시절차)**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외국어능력 기준)**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TEPS 451점 이상(석사), 501점 이상(박사)
2. TOEIC 545점 이상(석사), 600점 이상(박사)
3. TOEFL(CBT) 167점 이상(석사), 117점 이상(박사)
4.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
②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**제8조(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)** 계획발표 1주일 전까지 제출자격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** ①박사학위과정은 등재(후보)지 2편 이상(1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의무)을 충족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예외)** ①BK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전일제 학생에 대해서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지도교수별로 1인에 한하여 제7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

에 대하여 학위청구논문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학생이 추후 의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다른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무조건을 유예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세칙의 개정)**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4.20.)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논문지도위원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.

##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

학 번		성 명	
소 속	직 위	성 명	위 원 (위원장)

위와 같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\_\_\_\_\_ (인,서명)

지도교수 \_\_\_\_\_ (인,서명)

### 체육학과 주임교수 귀하

※ 작성요령

1. 대상 : 27학점(3학기) 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
2.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: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함
3.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함

## 논문 계획 승인서

소 속 대 학 :

전 공 :

학 번 :

성 명 :

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  
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.

심사 위원장 : (인)

심사위원 : (인)

심사위원 : (인)

학과주임 : (인)

체육학과 주임교수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학술지게재 점수 계산표

[○○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]

작성일 : 200 년 월 일

작성자 :

1.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

성 명		박사과정기간	200 . . . ~ 200 . . . (6년 개월)		
청구논문제목					
지도 교수		전공 분야			
현 직장명					
부 서		직 위		전화번호	

2. 발표논문의 실적요약

구 분	심사대상논문		기 타 사 항	
	건	점 수		건
국 외 논문			국 외 논문	
국 내 논문			국 내 논문	
국외학술회의			국외학술회의	
국내학술회의			국내학술회의	
총 점 수			보고서, 특허, 잡지기사 등	

3. 논문발표실적

구 분		논 문 명	저널명/ 발표기관	년월	저자명 (순서)	점수	관련도
논문지게재	국외						
	국내						
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	국외						
	국내						
기 타 사 항							

- 점수와 관련도는 지도교수가 확인하고 기타사항의 내용은 점수를 기재하지 않음.

4. 특허실적

구 분	특 허 명	등록(출원)번호	등록일	등록자	점수	관련도
국내						
국외						

붙임 ; 증빙자료 ○부